

#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5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2월 9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개정('25. 12. 10.)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항목의 세부항목명과 평가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평가항목 2(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의 나. '공금예금 적용금리'를 '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'로 변경(안 별표 1)
- 나. 평가항목 2(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와 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)의 가. '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'은 다른 평가항목에서 적용하는 순위 간 편차의 1/2을 적용하는 규정 삭제(안 별표2)
- 다. 평가항목 2(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의 나.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의 배점을 6점에서 8점으로 하고, 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의 배점은 3점에서 1점으로 변경(안 별표 1 및 안 별표 2)
- 라. 평가항목 5(금고업무 관리능력)의 라. '수납시스템(OCR센터, ETAX 등) 구축·운영능력'을 라. '수납시스템 구축·운영능력'으로 세부항목명 변경(안 별표 1 및 안 별표 2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(행정안전부 예규)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 제외대상

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관련 규정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 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6. 1. 15.~1. 23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재무국 재무과 안수현(☎2133-3228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(제7조제1항 관련)

### I. 일반원칙

1.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평가 세부항목별(1- 가,나,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)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% 이상으로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 다만, 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)의 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해야 한다.

### 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#### 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(25점)

#####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8점)

-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
- 평가
  - ※ 단,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
- 평가방법
 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##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(17점)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  - 총자본비율 (안정성, 6점)
    -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 6점)로 평가
  - 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, 6점)
  - 자기자본이익률 (수익성, 5점)
    - 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수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융감독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
    - 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

## 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(20점)

###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 (7점)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 나.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(8점)

- 공금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 (4점)

-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 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(1점)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 3. 시민의 이용 편의성 (18점)

### 가. 관내 지점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 설치 대수 (7점)

-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,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
※ 단,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"관내 지점 수"에서 제외

### 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(5점)

-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 다.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(6점)

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 방안, 과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 4. 금고업무 관리능력 (28점)

### 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(6점)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(8점)

-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###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(8점)

- 전산보안시스템(H/W, S/W)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라. 수납시스템 구축·운영능력 및 계획 (6점)

- OCR센터,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·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(7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(5점)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(2점)

-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6. 그 밖에 사항 (2점)

가. 녹색금융 이행실적 (2점)

-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,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※ II-3,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<b>[별표 1]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(제조제항 관련)</b>	<b>[별표 1]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(제조제항 관련)</b>	
평가항목	평가 세부항목	배점
계		100
1. 금융기관의 대 내 외 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 정 성		25
	가. (생략) 나. (생략)	(8) (17)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	20
	가. (생략)	(7)
	<b>나. <u>공금예금 적용금리</u></b>	<b>(6)</b>
	다. (생략) <b>라. <u>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</u></b>	(4) <b>(3)</b>
3. 시민의 이 용 편의성		18
	가. (생략)	(7)
	나. (생략) 다. (생략)	(5) (6)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28
	가. (생략)	(6)
	나. (생략)	(8)
	다. (생략) <b>라. <u>수납시스템(OCR센터, ETAX 등) 구축· 운영능력 및 계획</u></b>	(8) <b>(6)</b>
5. 지역 사회 기 여 및 시 와 의 협 력 사 업		7
	가. (생략) 나. (생략)	(5) (2)
6. 그 밖에 사항		2
	가. (생략)	(2)
평가항목	평가 세부항목	배점
계		100
1. 금융기관의 대 내 외 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 정 성		25
	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	(8) (17)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		20
	가. (현행과 같음)	(7)
	<b>나. <u>수입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</u></b>	<b>(8)</b>
	다. (현행과 같음) <b>라. <u>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</u></b>	(4) <b>(1)</b>
3. 시민의 이 용 편의성		18
	가. (현행과 같음)	(7)
	나. (현행과 같음) 다. (현행과 같음)	(5) (6)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28
	가. (현행과 같음)	(6)
	나. (현행과 같음)	(8)
	다. (현행과 같음) <b>라. <u>수납시스템 구축· 운영능력 및 계획</u></b>	(8) <b>(6)</b>
5. 지역 사회 기 여 및 시 와 의 협 력 사 업		7
	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	(5) (2)
6. 그 밖에 사항		2
	가. (현행과 같음)	(2)



현 행	개정(안)
<p>3. 시민의 이용 편의성 (18점)  가. (생략)  나. (생략)  다. (생략)</p> <p>4. 금고업무 관리능력 (28점)  가. (생략)  나. (생략)  다. (생략)  <b>라. 수납시스템(OCR센터, ETAX 등) 구축</b>  <b>· 운영능력 및 계획 (6점)</b>  · OCR센터,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  ·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 따라 점수 부여</p> <p>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(7점)  가. (생략)  나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사항 (2점)  가. (생략)  ※ (생략)</p>	<p>3. 시민의 이용 편의성 (18점)  가. (현행과 같음)  나. (현행과 같음) 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금고업무 관리능력 (28점)  가. (현행과 같음)  나. (현행과 같음)  다. (현행과 같음)  <b>라. 수납시스템 구축·운영능력 및 계획 (6점)</b>  · -----  -----  -----</p> <p>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(7점)  가. (현행과 같음) 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그 밖에 사항 (2점)  가. (현행과 같음)  ※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의 개정('25. 12. 10.)사항을 반영하고, 우리시 금고 운영 현황에 맞게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재무국 재무과 안수현(02-2133-3228)